

『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의거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시지역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을 추가 고시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
 - 도시계획구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있는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 중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에 정한 토지·건축물 또는 주택
-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추가 고시대상 : 122,341m²
 - 고아읍 : 1개리 229m² (오로리 일부지역)
 - 산동면 : 2개리 122,112m²(동곡리, 적림리 일부지역)
-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도면 : 붙임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세법」 제112조, 제116조

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111조

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, 제3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고시안은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 및 「구미시 시세 조례」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- 구미시 고시안은 고아읍 오로리 일부지역과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에 편입되는 산동면 동곡리, 적림리 일부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상기 지역은 도심확장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밀집이 예상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의 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으로 추가하는 고시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